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 추진체계 및 추진현황

김 주 호

농림부 농촌정비과 사무관

I. 머리말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복지시설을 합리적으로 정비 확충함으로써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기하고 국토를 균형있게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농림부의 1995년도 농업동향에 의한 년차 보고서에 의하면 이 사업의 목표를,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농어촌에 현대적 생활기반과 경쟁력있는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농업인이 농어촌에 살면서 전원도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종합개발사업으로서 낙후된 농어촌을 농업인과 비농업인이 공존하는 전원도시형의 농어촌으로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은 일반정주권 개발사업, 문화마을조성사업,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한계농지 정비사업,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 등이 있다.

면단위 농어촌정주생활권개발사업은 마을단위로 생활환경을 집중 정비해 나가는 문화마을 조성사업과 면 전체지역을 대상으로 생활기반시설을 지원해 나가는 일반 정주권개발사업으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으며 농어촌지역의 물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에 힘입어 전국의 상수도보급율이 82%수준까지 높아졌으나, 면단위 이하 농어촌 자연마을은 상수도보급율이 16.4%에 불과하고, 아직도 우물·하천수등 자연수에 의존하는 마을이 40%를 상회하고 있을뿐 아니라 간이상수도가 보급되어 있는 마을의 경우에도 수량이 부족하거나 수질이 오염되어 근본적인 생활용수대책이 시급한 마을이 상당수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농어촌지역도 목욕탕, 수세식화장실 등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용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어촌의 어려운 물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세로이 마련된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하여 2004년까지 농어촌마을 5천개소를 대상으로 농어촌생활용수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 한계농지 면적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실시중인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자원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체 농경지 면적의 17.5%에 해당하는 약 360.4천ha에 달하며,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급하고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계곡사이에 있는 '논' 내지는 '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계농지는 대부분 고지대의 경사지 또는 도시로부터 원격지에 위치하고 있어 우량농지에 비해 여러가지 면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 특히, 임금과 운반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증가, 토양침식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로 한계농지에서의 농업수익성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한계농지를 체계적으로 개발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하여 한계농지정비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국가발전에 따른 소득수준 향상과 자유시간의 증대, 그리고 건강 장수에 대한 욕구는 국민의 생활형태에 변화를 불러오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관광 등 여가활동 증가와 건강식 자연 식품 선호 성향이다. 이와같은 국민의 일반적인 성향과 조류에 대응하면서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안으로 농촌휴양자원개발이 제안되었다. 농촌휴양자원 개발은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에 유치함으로써 농촌경제의 활성화, 지역농산물 수요의 개척, 유희 농업자원의 소득화, 지역개발등 부수적인 농어촌개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구체적인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관광농원, 휴양단지, 민박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부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주권개발사업의 추진 체계와 추진 현황은 다음과 같다.

II. 사업추진 체계 및 추진현황

1. 일반정주권개발사업

가. 사업목적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편익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도농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활력있는 농어촌을 건설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

나. 사업내용

- 마을기반정비 : 마을내 도로, 상 하수도 시설 등
- 농어촌지역 도로정비 : 마을간 도로, 연결도로, 교량등
- 농어촌산업개발 : 공동 영농어시설(집하장, 공동 작업장, 가공·저장 시설등), 농로 등
- 문화복지시설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 환경보존시설 : 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도시설 등
- 재해방지시설 : 하천정비, 마을안전시설 등
- 주택정비 : 신축, 개량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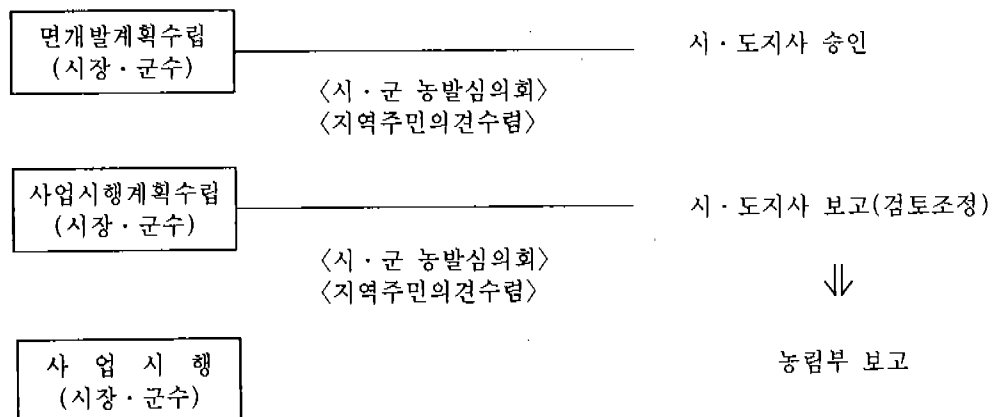
다. 법적근거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정주권개발)

라. 사업시행

시, 군별로 배분되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시장·군수가 대상사업선정 시행

- 보조사업 : 마을도로, 교량, 복지회관, 저장창고 등 기반시설
- 용자사업 : 주택신축 및 개량, 농어촌 용수, 주민편의시설 등
- 지원기준 : 면당 39~45억원 수준(보조 30, 용자 9~15)
 - 보조사업 : 시 군의 면수비율에 의해 배분(지방양여금, 지방비)
 - 용자사업 : 면당 9~15억원 범위내에서 2~3년간 지원(농특용자)
 - 주택용자금 : 년리 5.5%, 5년거치 15년상환(호당 최고 2,000만원)

마. 사업추진체계



바.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95까지	'96	'97(P)	'98이후	
사업량	772	112	53	54	553	
사업비	계	3,033,920	831,188	238,635	238,605	1,725,492
	보조	2,297,600	608,713	162,319	177,305	1,349,263
	용자	736,320	222,475	76,316	61,300	376,229

*사업량은 보조사업 완료면 기준임.

○ '97 사업추진계획

구분	사업량(면수)			사업비 (백만원)	비고
	신규	계속	완료		
계	-	-	-	238,605	
○ 보조사업	62	140	54	177,305	97시행면 : 256면
- 국고(잉여금)	-	-	-	124,114	
- 지방비	-	-	-	53,191	
○ 용자사업	50	85	39	61,300	97시행면 : 174면
- 농특회계	-	-	-	61,300	

○ 정주생활권개발사업 연도별 사업내용

사업명	'90~94		'95실적		합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 문화마을조성부문 - 단지조성, 오페수처리 시설	32지구	1,025	19지구	700	51지구	1,725
○ 마을기반정비부문 - 마을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주차장 등	도로465km외	1,408	도로142km외	393	도로607km외	1,801
○ 도로정비부문 - 도로, 교량, 승차장 등	도로1,065km외	2,272	도로141km외	496	도로1,191	2,768
○ 문화복지시설부문 - 복지회관, 마을회관 등	357동	332	114동	110	471동	442
○ 농어촌산업기반부문 - 집하장, 저장고 등	73개소	464	13개소	155	86개소	619
○ 농어촌주택정비부문	13,883동	1,606	3,236	535	17,119	2,141
○ 계획수립 등	-	398	-	92	-	490
소계(일반정주권)		6,480		1,781		8,261
합계		7,505		2,481		9,986

2. 문화마을조성사업

가. 사업목적

농어촌생활권의 중심마을을 근간으로 지원을 집중하여 기존마을 정비와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농어촌주택단지를 조성, 현대적 생활환경을 정비하여 생산기반정비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병행, 연계 추진함으로써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농어촌마을 조성

나. 사업내용

- 현대적 생활기반시설을 갖춘 약 100호 ~ 300호규모(50,000㎡내외)의 신규 마을 조성과 기존마을 재정비
- 마을기반시설(택지조성, 단지진입로, 마을안길정비, 생활용수 및 마을하수도, 전기 통신시설등)과 현대식 주택의 신축 및 개량
- 복지회관, 공동주차장,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편익시설
- 농수산물가공시설, 농기계수리소, 공동작업장, 공동건조장, 보관시설등 산업시설 유치
- 오폐수처리시설 등 환경개선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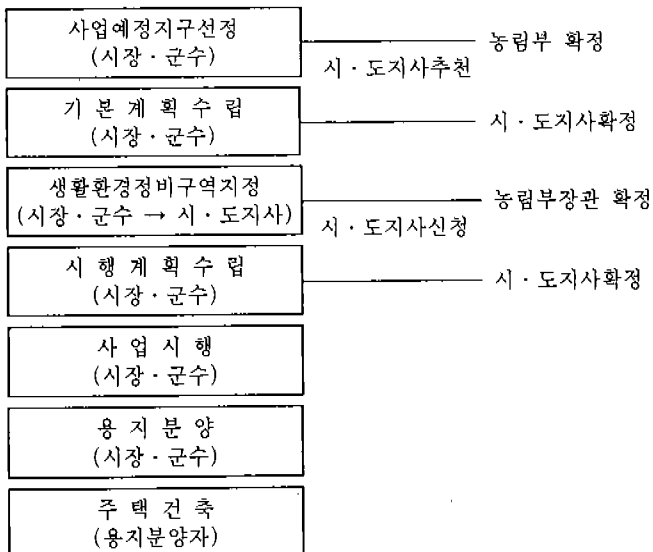
다. 사업시행자 : 시장 군수

라.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생활환경정비)

마. 지원기준

- 지구당 3년내외에 50억원 수준(보조 20, 용자 30)
 - 보조사업 : 단지조성(지방양여금, 지방비)
 - 용자사업 : 용지매수 및 주택건축비(농특용자)
- 용지매수 : 2년거치 2년상환 년리 3%
- 주택건축 : 5년거치 15년상환 년리 5%(호당 최고 2,000만원)

바. 사업추진체계



○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합계	'95까지	'96	'97(P)	'98이후	
사업량	772	51	21	24	676	
사업비	계	3,865,485	149,321	85,378	103,151	3,527,635
	보조	1,545,785	64,102	43,584	57,391	1,349,263
	용자	2,319,700	85,219	41,794	41,794	2,146,927

※ 사업량은 착수기준임

○ 사업추진현황

구분	지구수	추진현황
계	96	○ 단지조성완료(32) ○ 단지조성공사중(40) ○ 계획수립중(24)
'91착수	2	○ 단지조성 및 주택건축완료(2)
'92착수	13	○ 단지조성완료 및 주택건축(13)
'94착수	17	○ 단지조성완료 및 건축공사중(17)
'95착수	19	○ 단지조성공사중(19)
'96착수	21	○ 시행계획수립 및 단지조성공사중(21)
'97착수	24	○ 기본계획수립중(24)

3.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

가. 사업목적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에서 제외된 면단위이하 농촌지역의 자연마을에 암반관정을 개발, 생활용수및 농업용수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소득증대에 기여

나. 사업내용

- 수원공시설 : 암반관정, 양수장옥, 전기시설
- 이용시설 : 송·배수관, 물탱크, 정수시설

다. 지원대상

- 광역 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에서 제외된 면단위 이하의 자연마을중 우물, 하천수등 자연수 이용마을
- 간이상수도를 이용하는 마을중 필요수량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오염된 마을
- 상수도계획이 수립되었거나 수립예정인 지역, 수물예정지, 인구감소 등 항구적 주거지로 부적합한 지역은 제외

라. 지원규모 : 1지구당 170백만원(농특세) : 수원공시설80, 이용시설90

마. 시설기준

- 우물기준심도는 150~200m 적정수량 확보심도까지 착공
- 우물자재구경은 200mm 채수량은 150톤/일 이상
- 이용시설 : 송배수관, 물탱크, 정수장
- 도서지역등 특수지역은 채수량 100톤 이상으로 조정 가능

바. 사후관리

- 유지관리 : 마을자체 관리조직 구성, 운영 : 유지관리비 부담 및 노후대체시설비 적립
- 위생관리 : 시장, 군수가 주기적으로 점검(년4회, 8개 항목)하고 개발과정에서 폐공발생시 지표수 유입방지 조치 (시멘트 모르타르 주입후 그라우팅)

사. 추진체제

- 대상지 선정 : 희망마을 → 면 → 시·군 → 도(승인) → 농림부
- 사업비 지원 : 농림부 → 도 → 시·군
- 시행주체 : 시장·군수
- 사후관리
 - 유지관리 : 마을자체관리조직 구성·운영, 유지관리비적립 및 노후대체시설비 적립
 - 수질관리 : 시장·군수가 주기적으로 점검(먹는물수질기준 적용)·
 - 주요 8개항목(냄새,맛,색도,탁도,일반세균,대장균군,암모니아성질소,질산, 질소)은 분기별 1회, 전항목(43개)은 년1회이상 수질검사 실시

아. 사업효과

- '96까지 1,151개소를 개발하여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을 공급
 - 104천호 345천명에 생활용수공급 (139천톤/일)
 - 1개지구 평균 90호, 300명대상 생활용수 121톤/일 공급
 - 가구당 월평균 전기료 3,372원 부담(상수도 8,128원)
 - 4,590ha에 농업용수 공급 (205천톤/일)
 - 1개지구 평균 농업용수 178톤
 - 축산·수산용수등 공급 (7천톤/일)
- 농촌생활용수개발사업의 추진으로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율 '90년 28% → '95년 39%로 높아져 양질의 생활용수 공급확대

○ 추진계획 및 실적

구 분	2004까지 계획	96년까지 실적	97년까지 계획	98년 이후
사업량(개소)	5,000	(299) 1,151	<299> 313	3,536
사업비(억원)	8,500	1,730	800	5,970

※ ()는 수원공개발, < >는 이용시설설치개소

4. 한계농지정비사업

가. 사업목적

영농조건이 불리하여 생산성이 낮은 한계농지등을 체계적으로 개발·정비하여 한정된 국토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관리

나. 사업내용

○ 사업규모 : 1지구 10ha 기준

○ 정비유형

- 농림수산업적이용 : 과수, 원예, 특작, 축산단지, 양어장 등
- 농어촌휴양자원이용 : 관광농원, 주말농원 등
- 다목적이용 : 농어촌주택·택지 및 부속농지, 공업·문화·체육시설 등

다.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및 농어촌진흥공사

라.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제76조 내지 제85조

마. 지원기준

- 지구당 40억원 수준 융자 (농지관리기금)
- 융자조건 연리30% 2년거치 2년균분상환

바. 추진실적 및 계획

- '95.6 농어촌정비시행에 따라 사업추진
- 96년에는 3개소 (5,325백만원)의 시범사업 추진
- 지구 지정승인 완료
 - 충남 논산 수락지구 (다목적이용형)
 - 경북 포항 상송지구 (다목적이용형)
 - 전북 진안 진안지구 (농어촌 휴양자원 이용)
- '97년에는 4개소(14,000백만원) 사업추진계획

사. 사업추진체계

정비지구 지정고시

○ 기본 방침 수립 : 농림부장관	법 제76조
○ 예정지 조사 : 국가, 지자체, 농진공	법 제78조
○ 지구지정승인요청 : 도지사	법 제79조 제2항
○ 지구지정승인 : 농림부장관 - 국토이용계획변경 협의	법 제79조 제3항
○ 지구지정 및 고시 : 도지사	법 제79조 제2항



사업계획수립

○ 정비 유형 : 농림수산업적이용, 농어촌휴양자원이용, 다목적이용	법 제77조
○ 사업계획수립 : 농진공	법 제81조 제1항
○ 사업계획 승인고시 : 승인권자- 장관, 도지사, 시장·군수	법 제82조



사업시행 및 분양

○ 사업시행 : 농진공 - 필요시 시·군 또는 토지소유자와 공동시행	법 제81조 제1항 및 제2항
○ 사업준공검사 : 승인권자	법 제82조
○ 토지 및 시설분양 : 농림어업인 및 관련단체, 실수요자에게 분양	법 제83조

5. 농촌휴양자원개발사업

가. 사업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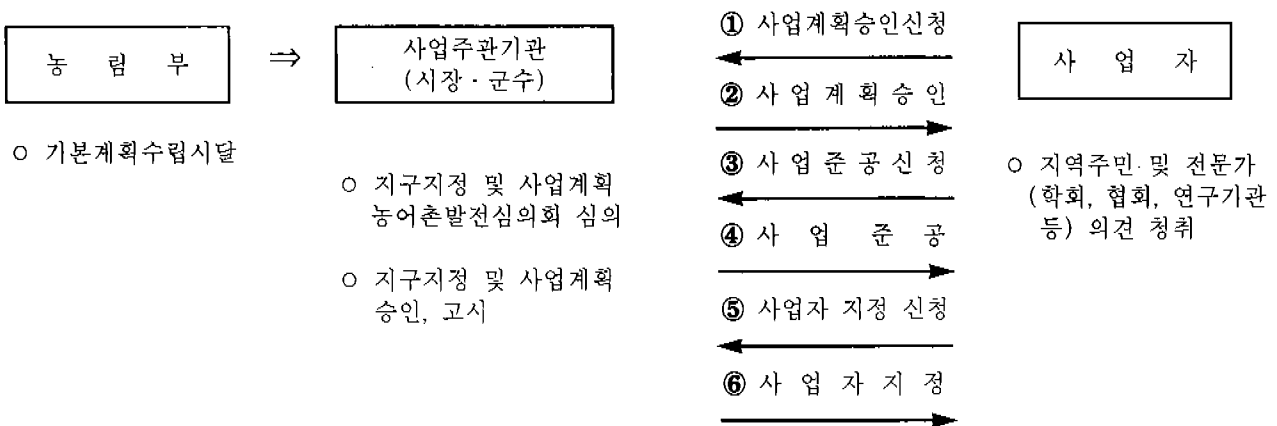
농촌지역의 풍부한 휴양자원을 농업과 연계 개발하여 증가하는 국민의 여가수요를 농촌공간에 유치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업인 소득증대와 지역개발촉진

나. 사업개요

	관 광 농 원	휴 양 단 지	민 박 마 을
사 업 자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축·수·임협, 농업인	시장·군수,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발조합, 농·축·수·임협	농업인
사업규모	50,000㎡이상 (10,000㎡이상)	30,000㎡이상 100,000㎡이상	농가5호 이상
사업내용	농촌의 자연자원과 농업생산기반을 이용하여 농산물판매, 영농체험, 운동, 휴양, 숙박 시설 등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거나 음식 또는 용역을 제공, 농장은 전체면적의 40%이상 조성의무화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촌특산물 등을 활용하여 농림어업전시관, 자연학습관, 지역특산물판매장, 체육·휴양시설 등을 갖추어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시설, 음식 등을 제공	농촌주택을 개·보수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농촌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
시설의 종류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정비법 시행 규칙이 정한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할 것. ○ 관광농원, 휴양단지의 휴양시설을 원두막, 낚시터 등 이용객에게 휴식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사업 본래취지에 적합할 것. ○ 기타시설을 주차장, 공중화장실, 농기구보관장고, 관리사무실 등 공동편의 및 사업장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로서 사업 본래취지에 적합할 것. 		
지원한도	농원당 450백만원	단지당 2,500	마을당 300(농가당 15)
융자조건	년 8%, 5년거치 5년상환	년 5%, 3년거치 5년상환	년5%, 2년거치 3년상환

다. 법적근거 : 농어촌정비법

라. 사업추진체계



○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억원)

구 분	목 표	'95까지	'96	'97(P)	'98이후
○ 사업량	1,176	418	104	91	563
- 관광농원	700	294	54	55	297
- 휴양단지	68	11	(1)	1	56
- 민박마을	408	113	50	35	210
○ 지원액(음자)	3,055	854	242	260	1,699
- 관광농원	1,786	658	192	193	743
- 휴양단지	981	126	5	15	835
- 민박마을	288	70	45	52	121

() 계속지구